

2018년 사회복지법인 석명복지재단 예산 총칙

제1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0,010천원으로 한다.
제2조	세입·세출의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총관 명세서와 같다.
제3조	예산의 사업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후원금, 수익자부담 경비 등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 및 수입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세출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경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단, 동일 항 내의 목간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이사(시설회의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1) 세입/세출 총괄

(단위:천원)

세입				세출				
관	항	명	2018년 예산	관	항	명	2018년 예산	
합 계				합 계				
세입수입	세입수입	소계	-	사무비	사무비	소계	1,800	
							300	
							1,500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소계	20,000	공영비	회비		6,210	
							600	
							1,680	
							960	
							1,770	
							600	
							600	
이월금	이월금	소계	-	사무비	기타공영비		600	
					연료비		600	
					제세운과금		1,770	
					운공요금		960	
					수용비 및 수수료		1,680	
					여비		600	
					소계		6,210	
								2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전입금	전입금	소계	-	재산조성비	재산조성비	소계	2,200	
							1,000	
							1,200	
사무비	사무비	소계	13,800	인건비	인건사면비		6,200	
							4,000	
							19,600	
							10,000	
							10,000	
전출금	전출금	소계	6,000	공유재산관리금	자산관리유지비		1,200	
								6,000
공유재산관리금	공유재산관리금	소계	6,000					
공유재산관리금	공유재산관리금	소계	6,000					
합계	합계	소계	40,010					